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안내



《 차 례 》

1. 법학전문대학원 소개-----	7
2. 교수진 및 행정실-----	11
3. 학사제도	
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대학원) -----	15
나. 등록-----	15
다. 휴학·복학-----	15
라. 장학제도-----	15
마. 기타제도-----	16
4. 학사일정표-----	19
5. 졸업요건-----	23
6.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가. 교육과정-----	27
나. 교육과정 이수-----	27
다. 수강신청 -----	27
라.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 -----	27
마. 성적평가-----	28
바. 재수강-----	29
사.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	29
아. 성적취소/무효-----	30
자.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	30
차. 법학사 기수학점 인정제도-----	31
카. 수강신청 안내-----	31
7. 편성교과목 및 개설교과목	
가. 편성교과목 현황 -----	39
나. 2024년 입학생 교육과정 체계-----	41
다. 전공계열별 개설가능과목 일람표-----	42
라. 교과목편성표-----	43
마. 기업법무 특성화 교과목 일람표-----	48
8. 기타 생활안내	
가. 법학도서관-----	53
나. 중앙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	54
다. 학생증 발급-----	56
라. GLS 사용방법-----	57
마. 기타 편의시설 안내-----	59
[첨부]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규정-----	61



법학전문대학원 소개

1. 법학전문대학원 소개

가.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우리 대학원” 이라 함)의 교육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자기완성과 인류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임. 본 교육이념은 인의예지(仁義禮智), 실사구시(實事求是),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표현되는 교육목적에 의해 구현되며, 교육목표는 『플러스+형 법률전문가』의 양성임. 『플러스+형 법률전문가』라 함은 법조윤리의식과 법률지식,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8가지 기본역량(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창의적·통합적 사고, 논리적·비판적 사고, 전문가 역량, 법조윤리·가치관, 인간관계역량, 글로벌 역량)의 강화에 의해 실천됨.

플러스+형 법률전문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식 + 법률실무 + 법조윤리·가치관을 겸비한 법률전문가 • ‘법학+인접학문’, ‘법학+법학’의 각 학문분야를 횡단·통섭하는 능력을 갖춘 학제적 인재 • 종으로 깊은 지식 + 횡으로 넓은 역량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 인재 • ‘더한다’의 함축적 의미를 담아 세계 + 국가 +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기본 역량	•소통역량 •문제해결역량 •창의적·통합적 사고역량 •논리적·비판적 사고역량 •인간관계역량 •전문가역량 •법조윤리·가치관 •글로벌 역량

『플러스+형 법률전문가』는 개인차원에서는 인의예지의 덕목을 통해 풍부한 교양을 갖추고 사회, 국가 차원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함.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플러스+형 법률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나. 로스쿨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학위과정(J.D.), 전문박사학위과정(S.J.D.), 공개과정 등을 운영함. 로스쿨 국제화 정책으로 미국 변호사협회(ABA)가 공인한 포담대와 로스쿨 하계 법학과정을 200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글로벌 J.D./LL.M., J.D./MBA 등 포담대 및 인디아나대학, 일리노이대학, 에모리대학, SKK GSB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함. 법학전문대학원은 설치인가 심사평가 교원부문 1위의 연구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였으며, 미국, 일본, 중국 로스쿨 교원들이 강의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로스쿨 교육을 지원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도 국내 로스쿨 중 재판연구원 합격자 수 1위, 경력법관 임용 2위, 검사 임용 4위로 입학정원 대비 공직 진출 비율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음.

다. 로스쿨 역사

- 1948년 7월 정경학부(政經學部)에 법률학과 설치
- 1953년 2월 법정대학 법률학과로 개편, 대학원 설치
- 1982년 3월 법정대학을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 법률학과를 법학과로 명칭 변경
- 2008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 2008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본인가
-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제1기생 120명 입학
-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생 103명 졸업
- 2013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2기생 112명 졸업
- 2014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3기생 108명 졸업
- 2015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4기생 123명 졸업
- 2016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5기생 119명 졸업
- 2017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6기생 120명 졸업
- 2018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7기생 104명 졸업
- 2019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8기생 106명 졸업
- 2020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9기생 121명 졸업
- 2021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10기생 119명 졸업
- 202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11기생 99명 졸업
- 2023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12기생 114명 졸업
- 2024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제13기생 113명 졸업



교수진 및 행정실

2. 교수진 및 행정실

가. 교수진

순번	이름	연구실	전화	e-mail	전공
1	강현호	20415	760-0342	kanghh@skku.edu	행정법
2	고동원	20410	760-0592	dwko@skku.edu	상법/금융법
3	권철	20425	760-0245	kchfirst@skku.edu	민법
4	김민호	20416	760-0376	mkim@skku.edu	행정법/IT법
5	김성돈	20414	760-0343	ksdon@skku.edu	형법
6	김성용	20513	760-0553	sothough@skku.edu	도산법
7	김연미	20432	760-0626	yonmikim@skku.edu	상법/자본시장법
8	김일환	20413	760-0324	ilhwan@skku.edu	헌법
9	김재원	20314	760-0595	jaewonkim@skku.edu	법사회학
10	김천수	20411	760-0619	chskim@skku.edu	민법
11	김홍영	20517	760-0573	hongyoung@skku.edu	노동법
12	김혜진	20418	760-0597	hjkim140901@skku.edu	행정법
13	남궁주현	20511	760-0215	namgung26@skku.edu	상법/국제거래법
14	노수환	20520	760-0354	shinelaw@skku.edu	형사법
15	문영화	20508	740-1661	younghm@skku.edu	민사소송법
16	민만기	20306	760-0345	mmk1122@skku.edu	형사법
17	서경미	20409	760-0346	skmi77@skku.edu	헌법
18	서정원	20510	760-0359	suhjw@skku.edu	민법
19	성재호	20412	760-0355	jhsung@skku.edu	국제법
20	손동환	20505	760-0616	dhshon@skku.edu	상법/공정거래법
21	신동훈	20512	760-0591	tirpitz5@skku.edu	형법
22	이경렬	20408	760-0216	klee04@skku.edu	형법
23	이길원	20311	760-0358	klee21@skku.edu	국제법
24	이선희	20521	760-0572	sunnylaw@skku.edu	민법
25	이승민	20307	760-0350	seungminlee@skku.edu	행정법
26	이준봉	20504	760-0598	bhslee@skku.edu	세법
27	이진기	20519	760-0617	cato@skku.edu	민법
28	이해완	20518	760-0217	solhiw@skku.edu	저작권법
29	이황희	20506	760-0357	hheelee@skku.edu	헌법
30	이효진	20417	760-0618	hellojin@skku.edu	형사법
31	장준혁	20522	760-0599	jhjang@skku.edu	국제사법
32	전휴재	20308	760-0351	micah66@skku.edu	민사소송법
33	정경영	20509	760-0323	gyjung@skku.edu	상법
34	정상현	20309	760-0347	jsh2004@skku.edu	민법
35	정차호	20313	760-0594	chaho@skku.edu	특허법
36	조원경	20420	760-0353	anne0310@skku.edu	민법
37	지성우	20507	760-0618	seongwooji@skku.edu	헌법
38	패트리샤게디	20524	760-0648	pgoedde@skku.edu	미국법
39	한에라	20523	760-0348	hanaera@skku.edu	민사소송법
40	현낙희	20310	760-0352	nhhyun@skku.edu	민사소송법
41	현소혜	20503	760-0344	sohye2@skku.edu	민법

나. 보직교수 및 행정실

구분	이름	전화	이메일	비고	
보직교수	원장	김일환	760-1032	ilhwan@skku.edu	
	교무부원장	정상현	760-0347	jsh2004@skku.edu	
	학생부원장	전휴재	760-0351	micah66@skku.edu	
	주임교수	신동훈	760-0591	tripitz5@skku.edu	
	학과장	현낙희	760-0352	nhhyun@skku.edu	
행정실	행정실장	천명호	760-0921	cmh1000@skku.edu	
	책임	유정훈	760-0924	ionios@skku.edu	
	책임	김정균	760-0922	jeangk@skku.edu	
	선임	박수민	760-0923	kkoimin@skku.edu	
	선임	소희진	760-0926	heejinso@skku.edu	
	변호사	김효범	760-0928	lawcc@skku.edu	경력개발센터
	변호사	이지애			
	직원	김수정			



학 사 제 도

3. 학사 제도

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 규정

- 학교 홈페이지(www.skku.edu) 대학정보 → 대학기관/규정 → 학칙/규정에서 조회가능
-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은 로스쿨 홈페이지(sls.skku.edu) 법학전문대학원 → 학사 안내 및 규정에서 조회가능

나. 등록

- ◆ **관련규정 : 학칙 제27조(등록), 제28조(등록금의 반환)**
- 매 학기 등록은 안내된 소정기간 내에 필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재학생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강신청은 가능함.
 - 등록 후에는 특별한 사정(군입대, 질병,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학이 가능함. 등록 후 특별한 사정 상 휴학하였다가 자퇴하는 경우, 휴학일을 기점으로 등록금 반환금 지급액이 결정됨.
 - 수업연한(6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할 경우, 4학점 이상 수강은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함.

다. 휴학복학

- ◆ **관련규정 : 학칙 제23조(휴학, 복학)**
- **휴학**
 - 신청방법 : **지도교수 면담 후 원장이 최종 승인함.**
 - 휴학 횟수 및 기간 제한
 - 휴학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휴학일에 따라 납입액 차등 반환됨.
 - 1학년생의 휴학은 질병(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등) 또는 부득이한 사유(입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함.
- **복학**
 -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 소정기간(1월, 7월중 학사일정 참조)
 -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 1년(2개 학기)간 휴학을 신청하였더라도, 1개 학기만 휴학 후 복학 가능함.

라. 장학제도

- 장학금 지급 심의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
- 장학금 지급 시기 : 2월(1학기), 8월(2학기)
 - 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장학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가능

- 장학금 중복 신청자 처리 : 동일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액수, 수혜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적으로 배정함. 장학금 성격과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장학 총액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가능한 장학금 총액을 정할 수 있음.

※ 장학금 종류

구분	지급대상	장학금액
삼성장학금 (성적우수)	·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텐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한 자로서 성적우수자 · 직전학기 재학생만 지급대상자로 복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	등록금 일정액
삼성장학금 (경제환경), 법전원취약 계층장학금 (경제환경)	· 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한 자로서,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라 선발 ·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텐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한 자	등록금 일정액
삼성장학금 (생활비)	· 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한 자로서,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생활비 지원	생활비 일정액
대외장학금	· 각 장학금 별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등록금 일정액

※ 장학금 지급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되고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 다만,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한 장학생일 경우 심사를 거쳐 예외 인정 가능 3.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텐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학자금지원 3구간에 해당되는 장학생일 경우, 심사를 거쳐 예외 인정 가능 4. 재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학칙 위반자 6. 6학기 초과 수혜자

마. 기타제도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정정원(사유가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첨부)을 첨부하여 GLS에서 신청

□ 본교 정기 휴업일

건학기념일 (9월 25일), 공부자탄강일 (9월 28일)



학 사 일 정 표

4. 학사일정표

□ 2024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표

년도	월 / 일	학사내용
2024	3. 1.(금)	2024학년도 및 1학기 개시일
	3. 4.(월)	1학기 개강
	3. 4.(월)~3. 8.(금)	수강신청 확인/변경
	3. 4.(월)~3. 8.(금)	2024학년도 1학기 추가 등록(분할납부자 포함)
	3.18.(월)~3.29.(금)	학생제안주간(Student Suggestion Week)
	3.20.(수)~3.22.(금)	수강철회 신청
	3.30.(토)	(학기 개시 30일)
	3.31.(일)	(수업일수 1/4)
	4. 1.(월)~4. 3.(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2차 등록(4회 분납자)
	4.22.(월)~4.24.(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최종(2회 분납자)/ 3차(4회 분납자) 등록
	4.22.(월)~4.26.(금)	1학기 중간시험 (*8주차)
	4.22.(월)~5. 3.(금)	1학기 중간강의평가
	4.27.(토)	(수업일수 2/4)
	4.29.(월)	(학기 개시 60일)
	5.13.(월)~5.16.(목)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최종 등록(4회 분납자)
	5.25.(토)	(수업일수 3/4) 일반휴학신청 마감기한
	5.29.(수)	(학기 개시 90일)
	6. 3.(월)~6.14.(금)	1학기 기말강의평가
	6.10.(월)~6.14.(금)	1학기 기말시험 (*15주차)
	6.14.(금)	1학기 로스쿨 종강일
	6.17.(월)~6.27.(목)	1학기 성적 입력
	6.21.(금)	1학기 본교 종강일 (수업일수 4/4)
	6.22.(토)	여름방학
	6.24.(월)	여름 계절수업/ 도전학기 시작
	6.27.(목)~7. 3.(수)	1학기 성적 공시
	7. 8.(월)	1학기 성적 확정
	7.22.(월)~7.26.(금)	2학기 재입학 신청
	7.22.(월)~8. 2.(금)	2학기 복학 신청
	7.29.(월)~9. 6.(금)	2학기 일반휴학 신청
	8.19.(월)~8.21.(수)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8.22.(목)~8.29.(목)	2024학년도 2학기 등록/ 분할납부 신청자 1차 등록
	8.23.(금)	2024년 여름 학위수여식
	8.31.(토)	여름방학 종료

□ 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표

년도	월 / 일	학사내용	
2024	9. 1.(일)	2024학년도 2학기 개시일	
	9. 2.(월)	2학기 개강	
	9. 2.(월)~9. 6.(금)	수강신청 확인/변경	
	9. 2.(월)~9. 6.(금)	2024학년도 2학기 추가 등록(분할납부자 포함)	
	9.16.(월)~9.27.(금)	학생제안주간(Student Suggestion Week)	
	9.19.(목)~9.21.(토)	수강철회 신청	
	9.25.(수)	건학기념일	
	9.28.(토)	공부자탄강일	
	9.29.(일)	(수업일수 1/4)	
	9.30.(월)	(학기 개시 30일)	
	10. 1.(화)~10. 4.(금)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2차 등록(4회 분납자)	
	10.21.(월)~10.23.(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최종(2회 분납자)/ 3차(4회 분납자) 등록	
	10.21.(월)~10.25.(금)	2학기 중간시험	
	10.21.(월)~11. 1.(금)	2학기 중간강의평가	
	10.26.(토)	(수업일수 2/4)	
	10.30.(수)	(학기 개시 60일)	
	11.11.(월)~11.13.(수)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최종 등록(4회 분납자)	
	11.23.(토)	(수업일수 3/4) 일반휴학신청 마감기한	
	11.24.(일)~12.20.(금)	재학중 입대휴학자 학점인정 신청가능 입대일	
	11.29.(금)	(학기 개시 90일)	
	12. 2.(월)~12.13.(금)	2학기 기말강의평가	
	12.16.(월)~12.20.(금)	2학기 기말시험	
	12.16.(월)~12.26.(목)	2학기 성적 입력	
	12.20.(금)	2학기 본교 종강일 (수업일수 4/4)	
	12.21.(토)	겨울방학	
	12.23.(월)	겨울 계절수업 시작	
	12.26.(목)~1. 2.(목)	2학기 성적 공시	
	2025	1. 7.(화)	2학기 성적 확정
		1.20.(월)~1.24.(금)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1.20.(월)~1.31.(금)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1.27.(월)~3. 7.(금)		2025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2.12.(수)~2.14.(금)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19.(수)~2.27.(목)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분할납부 신청자 1차 등록	
2.25.(화)		2025년 겨울 전체 학위수여식	
2.28.(금)		겨울방학 종료	

* 학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졸업요건

5. 졸업요건

※세부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18조 및
전문석사학위과정 졸업인증 요건인 신언서판의 운용지침 참조.

가. 졸업 인증

구분	내용
등록학기	6학기 이상
학점이수	필수 35학점 이상 총 90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총 평점평균 2.3이상 (C*이상)
졸업시험	졸업시험(공법, 민사법, 형사법 3과목 모두) 합격
졸업요건	<p>가. 신(身)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법조윤리의식 및 인성함양을 위한 아래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것 ① 법조윤리와 관련된 과목(‘법률가의 역할과 책임(2학점)’ 또는 ‘변호사의 직업윤리(3학점)’ 등 수강 ② 법학전문대학원 권장교양도서 3권 이상 독서 후 에세이 제출 (나) 사회봉사활동(총 40시간 이상) ① 근로봉사(16시간 이상) ② 법률봉사(24시간 이상): 법률상담, 법교육 기타 법률과 관련된 봉사활동 ※ 근로봉사와 법률봉사는 원칙적으로 교체 인정 불가 (2) 인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p>
신언서판 (身言書判)	<p>나. 언(言)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1) TOEIC 성적 850점 이상(TOFEL, TEPS 성적은 TOEIC 성적으로 환산함) ※ 입학일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이 위 점수 이상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2) 국제어 강의 1과목(3학점)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 취득 (3) 국제어 강의 2과목(6학점) 이상 학점 취득</p>
	<p>다. 서(書)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1) 법률정보조사(1학점)과 법문서작성(1학점)을 취득하고, 민사·형사·공법 소송 실무 과목 중 1과목(3학점)을 취득하여 합계 5학점 이상 이수 (2) 법률정보조사(1학점)과 법문서작성(1학점)을 취득하고, 고급법문서작성(2학점)을 취득하여 합계 4학점 이상 이수</p>
	<p>라. 판(判) (1) 전공 심화·응용과정에 개설된 모든 사례연구(PBL) 과목(각 3학점) 중 2과목(6학점) 이상 이수</p>
국제어	국제어 강의 의무이수 학점: 3학점 이상 이수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6.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가. 교육과정

□ 교육과정 구성

1.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 : 실무과목, 법률과목 및 법학기초이론/인접학문 과목
2. 교과목의 중요성, 근본성 및 심화정도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3. 교과목 이수단계 : 기초, 기반, 심화 및 응용단계로 구분

□ 특성화분야 : 기업법무(학생 자율 선택 이수)

- 기업법무 교과목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기업법무분야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함.

나. 교육과정 이수

□ 교육과정 이수 방법

입학년도	필수과목	선택과목	계
2009년	28학점	62학점	90학점
2010년 이후	35학점	55학점	90학점
졸업 소요 학점 : 90학점			

다. 수강신청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과정	수료학점	학기당 수강신청 최대학점	비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90	18학점	6학기

* 다만 재학 중 2개 학기에 한해 21학점 수강신청이 가능함. 이 경우 소정기간(수강신청 시작일 이후, 수강신청 변경 기간 이전)에 미리 한 학기 21학점 이수 신청을 해야 함.

* 학기당 국제어강의 수강가능과목은 2과목으로 제한됨.

라. 수강신청 변경 및 철회

- 수강신청 변경: 개강 후 소정기간 내 해당 과목 삭제 후 신규 수강신청
- 수강신청 철회: 철회는 학기 초 소정기간에 GLS를 통해 신청 가능하나, 과목 담당 교강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성적표에 수강철회가 표시됨.

마. 성적평가

□ 성적평가 시 고려사항: 성적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수업태도, 과제물, 토론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강좌특성을 고려하여 구술, 논술, 실습, (팀/개인)프로젝트 등의 평가방식을 활용

□ 성적평가 방식

- 상대평가 구분 : 11등급

등급	A ⁺	A ⁰	A ⁻	B ⁺	B ⁰	B ⁻	C ⁺	C ⁰	C ⁻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0

- 상대평가 비율: 2023학년도부터 적용

등급	점수	평점	필수과목	선택과목		국제어강의 과목
			수강인원 11명 이상	수강인원 11명 이상	수강인원 3~10명	
A ⁺	97 ~ 100	4.3	17%	35% (교원 재량)	40% 이내	40% 이내
A ⁰	94 ~ 96	4.0	18%			
A ⁻	90 ~ 93	3.7	-			
B ⁺	87 ~ 89	3.3	55% (교원 재량)	55% (교원 재량)	{(40% - A등급비율) + 60%} 이내	{(40% - A등급비율) + 60%} 이내
B ⁰	84 ~ 86	3.0				
B ⁻	80 ~ 83	2.7				
C ⁺	77 ~ 79	2.3	10% (교원 재량)	10% (교원 재량)	100% - (A등급비율 + B등급비율)	100% - (A등급비율 + B등급비율)
C ⁰	74 ~ 76	2.0				
C ⁻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이하, 불합격	0				
P	합격	-				

※ 수강인원 2명 이하 강좌는 폐강

※ 등급비율에 따른 소수점 이하 인원은 반올림 처리

※ 수강철회자, 非로스쿨학생(교환학생, 일반대학원생, 타과생 등) 및 학적변동자(자퇴생, 휴학생 등)는 상대평가 모수에서 제외

○ “P” (합격), “F” (불합격) 과목: 성적 등급 및 평점 없음

- P/F 과목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1. 법조윤리 (A등급은 수강인원의 70%까지 부여 가능) 2. 법률정보조사 3. 법문서작성1 4. 모의재판 5. 실무수습(엑스텐십)
선택과목	1. 법률가의역할과책임 2. 고급법문서작성 3. 법정토론과스피치 4. 실무연수(인턴십) 5. 민형사상담클리닉, 조정클리닉, 공익인권클리닉 6. 법문서작성2

바. 재수강

□ 교과목 재수강

구분	내용	비고
재수강 대상	기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 이하(F포함)인 과목은 <u>1회에 한하여</u> 재수강 가능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며, 학기당 2과목 재학기간 통산 6과목을 초과할 수 없음
재수강 후 성적 부여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 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	재수강으로 기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학기 성적평점평균이 변동 되어도 변동 전 성적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

□ 성적공시: 학기말시험 후 소정기간 내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

□ 성적이의신청: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아. 성적 취소/무효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3.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부여된 성적
4. 총 수업시간수의 5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의 성적
5.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6. 시험 부정행위로 3주 이상의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기 성적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자.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

□ 학사경고

-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학생 대상
- 국내외 대학에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의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국제어강의에서 취득한 성적과 P/F로 평가하는 법조윤리 및 실무과목의 성적은 위 평점평균의 산출에서 제외(유급에서도 동일함)
- 해당 학기 중 평점평균에 산입할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점평균을 F(0.0)로 봄

□ 유급

-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매 학년도 단위로 연속된 2개 학기를 말한다. 휴학 후 복학할 경우도 연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동일.) 단위로 유급하게 함. 유급한 학년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학년(연속된 2개 학기)의 평균평점이 2.25 이하이거나, 원장이 따로 지정한 전공과목 중 F등급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 중 평점평균에 산입할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점평균을 F(0.0)로 봄)
 2.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경우
 3.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 유급한 학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중 B⁰등급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처리(P 및 B+ 등급 이상의 성적은 유효)

□ 제적

1.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거나 통산 2회 유급된 경우
2.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

차. 법학사 기수학점 인정제도

□ 내용

- 법학사 기수학점을 9학점 이내 인정하며 성적은 Pass로 부여
- 취득학점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인정 신청 및 시험

- 신입생(법학사 출신)을 대상으로 입학 전 신청을 받아 시험 실시

카. 수강신청 안내

□ 성균인 가입

- 수강신청은 성균관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https://sugang.skku.edu>)에서 함.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킹고포털] 가입 필수)

□ 수강신청 일정: 학사일정에 따름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8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재학 중 **2개 학기에 한하여 21학점 수강신청 가능.**
행정실에서 별도 공지하는 기간 내 해당 학기 21학점 이수 신청을 해야 함.)
- 동일 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과 수강신청 시 “선수”로 수강 신청한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성균인 가입

Global Leading University 'SKKU' ENG | 별첨자료 | 킹고포털 | 킹고ID LOGIN

TODAY
1학기 일반유학 신청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SKKU)

S·Gallery

검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대학정보 입학 교육 연구 산학 국제화 대학생활 대학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일정 변경 안내

- 개강 1주 연기 3.2.(월) → 3.9.(월)
- 강의실 수업 시작일 3주 연기 3.2.(월) → 3.23.(월)
- 개강 초 2주분 수업은 온라인강의로 대체
- 종강 1주 연기 6.12.(금) → 6.19.(금)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SKKU)

Korean English

ID | ID 저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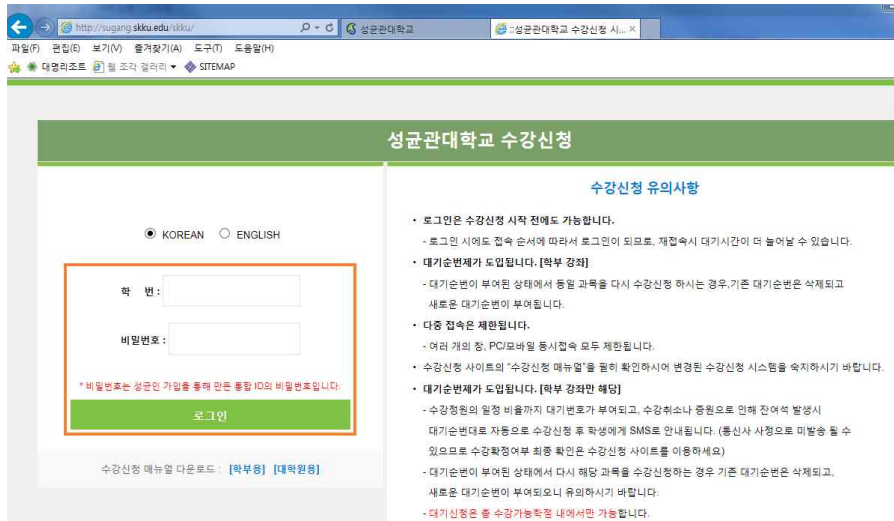
로그인

성균인 가입 ID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탈퇴

로그인 도움말 ?

□ 수강신청 사이트 로그인

- 수강신청 사이트 <https://sugang.skku.edu> 이동
- **학번**과 패스워드(경고포탈 패스워드와 동일) 입력



□ 수강신청

- 아래 같은 화면에서 ‘수강신청’,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를 클릭하여 수강신청 가능 과목 조회
- 수강신청 희망 과목의 ‘수강신청’을 체크하여 수강 신청(‘선수신청’ 아님)



□ 책가방 담기

- 경고포탈에서 GLS 로그인
- ※ 경고포탈에서는 메일, GLS, 증명발급, icampus 등 이용 가능



- 전자시간표(전문대학원) 클릭 후, 각 과목별 책가방 담기 실행
- 책가방 조회 메뉴에서 책가방 담은 과목 조회 가능

※ GLS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구분	내 용
학사일정	학사일정 안내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장학금, 등록금분할납부, 증명서 발급, 기숙사 신청 등
학적/개인영역	신상 및 주소 변경, 등록금 납입고지서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수업영역	교육과정 조회, 수업계획서 조회, 책가방, 수강신청 등
학업영역	성적확인, 강의평가 등



편성교과목 및 개설교과목

7. 편성교과목 및 개설교과목

가. 편성교과목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교육이념 및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체계 구현
-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교육이념은 인의예지(仁義禮智), 실사구시(實事求是),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구체적 인간상에 의해서 구체화되며 이는 「플러스+형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 의해 실천됨. 「플러스+형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우리 대학원의 교육은 8가지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지식, 법률실무, 법조윤리, 인본적 가치관을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지향함
- 「플러스+형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종합 체계도>

○ 교과목 편성 체계성

-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에 따라 실무과목, 법률과목 및 기초·인접학문 과목으로 구분
- 교과목의 중요성, 근본성 및 심화정도를 고려하여 교과목을 필수과목(법정 필수 실무 및 비법정 필수)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과목 이수 방향성 제시
- 교과목 이수단계에 따라 기초, 기반, 심화 및 응용 단계로 체계화

○ 교과목 편성 현황

	전체교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법정필수 실무과목	비법정 필수과목	
교과목 수	180	5*	11	164
학 점	510	5	30	475

* 법정필수실무과목 5과목(5학점): 법조윤리(1), 법률정보조사(1), 법문서작성1(1), 모의재판(1), 실무수습(1)

이론/실무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수 합계	
		법정 실무필수	비법정 필수	계			
실무	기초실무	5		5		5	
	기본실무				14	14	
	소계	5		5	14	19	
이론	기초이론		11	11		11	
	기초법·법학인접				12	12	
	전공 선택 과목	공법				18	18
		민사법				19	19
		형사법				17	17
		상사법				21	21
		조세법				10	10
		국제법				19	19
		회사법				1	1
		사회경제법				15	15
		지적재산권법				11	11
	외국법				7	7	
	소계	0	11	11	150	161	
계	5	11	16	164	180		

* 졸업 이수학점은 법 규정에 따라서 90학점으로 하고, 필수 35학점과 선택 55학점 이상으로 함

나. 2024년 입학생 교육과정 체계

과목분류		학점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과목	기초과목	공법분야	7	기본권론(2)	국가권력규범론(2)	행정법(3)				
		민사분야	15	계약법(4)	물권법(3) 민사소송법(3) 불법행위법(2)	회사법(3)				
		형사분야	8	형법I(3)	형법II(2)	형사소송법(3)				
	기초실무과목	5	법조윤리(1) 법률정보조사(1)		법문서작성I(1)	모의재판(1)	실무수습(엑스턴십)(1)			
	합계	35	11	12	10	1	1			
선택과목	기초법·법학인접과목		해당학기수권장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2) 법사상사(3) 비교법(3)		국제법과국내법원(3) 법경제학(3)	법사회학(3) 법제사(3) 변호사의 직업윤리(3) 현대법철학(3) 협상론(3)	법철학이론의 쟁점(3)		
	기본실무과목					민형사상담클리닉(2) 공익인권클리닉(2) 조정클리닉(2)	검찰실무 I (3) 민사집행법(3) 요건사실론(2) 형사소송실무(3) 형사재판실무(3)	검찰실무 II(3) 공법소송실무(3) 민사소송실무(3) 민사재판실무(3) 법정토론과스피치(1) 법문서작성2(3)	고급법문서작성(2) 실무연수(인턴십)(2)	
	전공계열별 심화과목	기본 프로그램 (심화과정)				1. 공법 2. 조세법 3. 형사법 4. 민사법	5. 상사법 6. 사회·경제법 7. 지적재산권법 8. 국제법			
		위크샵 프로그램 (응용과정)							1. 공법 2. 조세법 3. 형사법 4. 민사법	5. 상사법 6. 사회·경제법 7. 지적재산권법 8. 국제법
	외국법			영미법(2), 일본법강의(3)		미국법I(2), 독일법(2), 프랑스법(2), 중국법(2)		미국법II(2), EU법(2)		
	합계			55 이상	55학점 이상					
	총계				90학점 이상					

※ 필수실무과목(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엑스턴십])의 수강을 위하여 해당 학기의 전 학기까지 개설되는 필수과목을 이수할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전공계열별 개설가능과목 일람표

전공계열별 심화과목	과정	전공계열	1학기		2학기		
			1. 기본프로그램 (심화과정)		2. 위크샵프로그램 (응용과정)		3. 3학년 이수과목
전공계열별 심화과목	1. 기본프로그램 (심화과정)	※2학년 이수과목	1. 공법	방송통신법, 지방자치법, 행정구제법, 헌법재판		경제행정법, 도시계획법, 방송통신법, 입법과정론, 정보공개와보호법제, 아동과인권의국제적기준	
			2. 민사법	국제사법, 담보거래법, 도산법, 민사재판절차, 전자상거래법, 채권관계론, 친족법		국제민사소송법, 상속의법률문제, 현대민법의제조명	
			3. 형사법	개별범죄론, 경제형법, 형사소송법사례연구, 형사정책, 형사증거법		검찰실무I, 기업과기업범죄사태연구, 형법사태연구, 형사제재론, 형사특별법론	
			4. 상사법	금융거래법, 금융법입문, 기업지배구조, 기업회계, 도산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전자상거래법		국제계약법, 기업과기업범죄사태연구, 비교회사법, 소비자법, 소비자자와시장, 유가증권법, 자본시장법	
			5. 조세법	기업회계, 조세정책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법총론, 조세소송	
			6. 국제법	Public International Law, 국제민사소송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국제계약법, 국제기구법, 국제분쟁해결, 북한사회와법, 아동과인권의국제적기준	
			7. 사회·경제법	개별적노동관계법, 경제법, 공익법		국제경제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법, 집단적노동관계법	
			8. 지적재산권법	과학기술법, 저작권법, 지적재산법, 특허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특허출원·소송실무	
전공계열별 심화과목	2. 위크샵프로그램 (응용과정)	※3학년 이수과목	1. 공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교육문화예술행정법, 언론법, 장애인법, 헌법사태연구		공법사태연구,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행정법사태연구, 환경법	
			2. 민사법	민법사태연구, 언론법, 영문계약서작성실무, 현대사회와가족		가족법사태연구, 국제법사태연구, 민사법사태연구, 민사소송법사태연구, 민사특별법, 의료관계와법	
			3. 형사법	가정·소년범죄론, 검찰실무II, 교통형법, 국민참여재판론, 디지털포렌식개론, 형사법사태연구		국제형사재판소와국제법, 범죄피해자론	
			4. 상사법	조정거래법, 국제통상분쟁, 기업금융, 보험법, 영문계약서작성실무, 영미계약실무, 회사소송실무		ADR, Mergers & Acquisitions, 국제거래법총론, 국제금융법, 상사법사태연구, 샷사중재법, 해상법	
			5. 조세법	국제조세법, 상속증여세법		개인거래와조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법사태연구	
			6. 국제법	국제조세법, 국제통상분쟁,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국제거래법총론, 국제법사태연구, 국제인권법, 국제지적재산권법, 국제환경법, 샷사중재법	
			7. 사회·경제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Policy, 공정거래법, 산업재해소송, 장애인법, 해고와부당노동행위, 경제법		경제법사태연구, 노동법사태연구, 사회보장법, 환경법	
			8.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in a Global Context, 저작권법사태연구		국제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적재산권과특정규제법, 지적재산권라이센싱	

※ 밑줄 친 과목은 2개 이상 계열의 공통 과목임.

라. 교과목 편성표

연번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과목분류	이수학년	비고
1	LJD5001	법률정보조사	1	전공필수	기초실무	1	
2	LJD5002	법문서작성1	1	전공필수	기초실무	2	
3	LJD5003	기본권론	2	전공필수	기초이론	1	
4	LJD5004	국가권력규범론	2	전공필수	기초이론	1	
5	LJD5005	계약법	4	전공필수	기초이론	1	
6	LJD5006	불법행위법	2	전공필수	기초이론	1	
7	LJD5008	민사소송법	3	전공필수	기초이론	1	
8	LJD5009	형사소송법	3	전공필수	기초이론	2	
9	LJD5010	행정법	3	전공필수	기초이론	2	
10	LJD5011	회사법	3	전공필수	기초이론	2	
11	LJD5012	물권법	3	전공필수	기초이론	1	
12	LJD5016	법사상사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1	
13	LJD5017	형법 I	3	전공필수	기초이론	1	
14	LJD5018	형법 II	2	전공필수	기초이론	1	
15	LJD5020	법조윤리	1	전공필수	기초실무	1	
16	LJD5021	모의재판	1	전공필수	기초실무	2	
17	LJD5022	실무수습(엑스턴십)	1	전공필수	기초실무	3	
18	LJD5023	법률가의역할과책임	2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1	
19	LJD5024	현대법철학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2	
20	LJD5025	법철학이론의쟁점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3	
21	LJD5026	비교법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1	
22	LJD5027	법사회학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2	
23	LJD5028	법경제학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2	
24	LJD5029	협상론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2	
25	LJD5030	변호사의직업윤리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2	
26	LJD5032	민사집행법	3	전공선택	기본실무	3	
27	LJD5033	민사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기본실무	2	
28	LJD5034	형사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기본실무	2	
29	LJD5036	고급법문서작성	2	전공선택	기본실무	3	
30	LJD5037	법정토론과스피치	1	전공선택	기본실무	3	
31	LJD5038	실무연수(인턴십)	2	전공선택	기본실무	3	
32	LJD5041	미국법I	2	전공선택	외국법	2	
33	LJD5042	미국법II	2	전공선택	외국법	3	
34	LJD5043	독일법	2	전공선택	외국법	2	
35	LJD5044	프랑스법	2	전공선택	외국법	2	
36	LJD5045	EU법	2	전공선택	외국법	2	
37	LJD5047	중국법	2	전공선택	외국법	2	
38	LJD5048	헌법재판	3	전공선택	공법	2	
39	LJD5049	언론법	3	전공선택	공법	3	
40	LJD5050	입법과정론	3	전공선택	공법	2	
41	LJD5052	방송통신법	3	전공선택	공법	2	

연번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과목분류	이수학년	비고
42	LJD5053	헌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공법	3	PBL
43	LJD5054	지방자치법	3	전공선택	공법	2	
44	LJD5057	방송통신·인터넷규제법	3	전공선택	공법	2	
45	LJD5058	도시계획법	3	전공선택	공법	2	
46	LJD5059	환경법	3	전공선택	공법	3	
47	LJD5060	경제행정법	3	전공선택	공법	2	
48	LJD5061	교육문화예술행정법	3	전공선택	공법	3	
49	LJD5062	행정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공법	3	PBL
50	LJD5063	공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공법	3	PBL
51	LJD5064	조세법총론	3	전공선택	조세법	2	
52	LJD5065	소득세법	3	전공선택	조세법	2	
53	LJD5066	법인세법	3	전공선택	조세법	2	
54	LJD5067	상속증여세법	3	전공선택	조세법	3	
55	LJD5068	부가가치세법	3	전공선택	조세법	3	
56	LJD5069	조세소송	3	전공선택	조세법	2	
57	LJD5070	조세정책	3	전공선택	조세법	2	
58	LJD5071	국제조세법	3	전공선택	조세법	3	
59	LJD5072	조세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조세법	3	PBL
60	LJD5073	개별범죄론	3	전공선택	형사법	2	
61	LJD5074	형사특별법론	3	전공선택	형사법	2	
62	LJD5075	경제형법	3	전공선택	형사법	2	
63	LJD5077	교통형법	3	전공선택	형사법	3	
64	LJD5078	가정·소년범죄론	3	전공선택	형사법	3	
65	LJD5079	형사증거법	3	전공선택	형사법	2	
66	LJD5081	과학사론	3	전공선택	형사법	3	
67	LJD5082	형사제재론	3	전공선택	형사법	2	
68	LJD5083	국민참여재판론	3	전공선택	형사법	3	
69	LJD5084	형사정책	3	전공선택	형사법	2	
70	LJD5085	범죄피해자론	3	전공선택	형사법	3	
71	LJD5086	형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형사법	2	PBL
72	LJD5087	형사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형사법	3	PBL
73	LJD5088	담보거래법	3	전공선택	민사법	2	
74	LJD5089	채권관계론	3	전공선택	민사법	2	
75	LJD5091	의료관계와법	3	전공선택	민사법	3	
76	LJD5092	현대민법의재조명	3	전공선택	민사법	2	
77	LJD5093	민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민사법	3	PBL
78	LJD5094	친족법	3	전공선택	민사법	2	
79	LJD5095	상속의법률문제	3	전공선택	민사법	2	
80	LJD5096	현대사회와가족	3	전공선택	민사법	3	
81	LJD5097	가족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민사법	3	PBL
82	LJD5098	민사재판절차	3	전공선택	민사법	2	
83	LJD5099	도산법	3	전공선택	민사법	2	
84	LJD5100	국제사법	3	전공선택	민사법	2	

연번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과목분류	이수 학년	비고
85	LJD5101	국제민사소송법	3	전공선택	민사법	2	
86	LJD5102	국제사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민사법	3	PBL
87	LJD5103	민사소송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민사법	3	PBL
88	LJD5104	민사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민사법	3	PBL
89	LJD5105	ADR	3	전공선택	민사법	3	
90	LJD5107	전자상거래법	3	전공선택	상사법	2	
91	LJD5108	기업회계	3	전공선택	상사법	2	
92	LJD5109	유가증권법	3	전공선택	상사법	2	
93	LJD5111	자본시장법	3	전공선택	상사법	2	
94	LJD5112	보험법	3	전공선택	상사법	3	
95	LJD5114	영문계약서작성실무	3	전공선택	상사법	3	
96	LJD5115	회사소송실무	3	전공선택	상사법	3	
97	LJD5116	기업금융	3	전공선택	상사법	3	
98	LJD5117	기업지배구조	3	전공선택	상사법	2	
99	LJD5118	해상법	3	전공선택	상사법	3	
100	LJD5119	Mergers & Acquisitions	3	전공선택	상사법	3	
101	LJD5120	국제거래법총론	3	전공선택	상사법	3	
102	LJD5122	국제금융법	3	전공선택	상사법	3	
103	LJD5123	상사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상사법	3	PBL
104	LJD5124	상사중재법	3	전공선택	상사법	3	
105	LJD5126	개별적노동관계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2	
106	LJD5127	집단적노동관계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2	
107	LJD5128	해고와부당노동행위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108	LJD5129	산업재해소송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109	LJD5130	사회보장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110	LJD5131	노동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PBL
111	LJD5132	경제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2	
112	LJD5133	공정거래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113	LJD5134	소비자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2	
114	LJD5135	소비자와시장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2	
115	LJD5136	경제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PBL
116	LJD5137	공익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2	
117	LJD5138	장애인법	2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118	LJD5140	지적재산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2	
119	LJD5141	특허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2	
120	LJD5142	저작권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2	
121	LJD5143	과학기술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2	
122	LJD5144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2	
123	LJD5145	특허출원·소송실무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2	
124	LJD5147	지적재산권과특정규제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3	
125	LJD5148	지적재산권라이센싱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3	
126	LJD5149	국제지적재산권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3	
127	LJD5150	엔터테인먼트법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3	

연번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과목분류	이수 학년	비고
128	LJD5151	국제법	3	전공선택	국제법	2	
129	LJD5152	Public International Law	3	전공선택	국제법	2	
130	LJD5153	국제계약법	3	전공선택	국제법	2	
131	LJD5154	국제경제법	3	전공선택	국제법	2	
132	LJD5155	국제기구법	3	전공선택	국제법	2	
133	LJD5156	국제분쟁해결	3	전공선택	국제법	2	
134	LJD5157	북한사회와법	3	전공선택	국제법	2	
135	LJD5160	아동과인권의국제적기준	3	전공선택	국제법	2	
136	LJD5163	국제통상분쟁	3	전공선택	국제법	3	
137	LJD5164	국제환경법	3	전공선택	국제법	3	
138	LJD5165	국제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국제법	3	PBL
139	LJD5167	정보공개와보호법제	3	전공선택	공법	2	
140	LJD5168	검찰실무1	3	전공선택	형사법	2	
141	LJD5169	검찰실무2	3	전공선택	형사법	3	
142	LJD5170	저작권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지적재산권법	3	PBL
143	LJD5171	민사특별법	3	전공선택	민사법	3	
144	LJD5172	영미법	2	전공선택	외국법	1	
145	LJD5174	개인거래와조세	3	전공선택	조세법	3	
146	LJD5175	법제사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2	
147	LJD5178	금융거래법	3	전공선택	상사법	2	
148	LJD5181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3	전공선택	공법	3	
149	LJD5183	행정구제법	3	전공선택	공법	2	
150	LJD5184	민사재판실무	3	전공선택	기본실무	3	
151	LJD5185	영미계약실무	3	전공선택	회사법	3	
152	LJD5186	경찰실무	3	전공선택	기본실무	2	
153	LJD5187	비교회사법	3	전공선택	상사법	2	
154	LJD5188	형사재판실무	3	전공선택	기본실무	2	
155	LJD5190	디지털포렌식개론	3	전공선택	형사법	3	
156	LJD5191	한국법제의이해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1	
157	LJD5192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Policy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3	
158	LJD5194	기업과기업범죄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상사법	2	PBL
159	LJD5195	형사소송법사례연구(PBL)	3	전공선택	형사법	2	PBL
160	LJD5196	상법총칙·상행위법	3	전공선택	상사법	2	
161	LJD5197	공법소송실무	3	전공선택	기본실무	3	
162	LJD519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ternet Law	3	전공선택	국제법	3	
163	LJD51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Law and Policy	3	전공선택	상사법	3	
164	LJD5200	국제법과국내법원	3	전공선택	국제법	2	
165	LJD5202	국제인권법	3	전공선택	국제법	2	
166	LJD5203	요건사실론	2	전공선택	민사법	2	

연번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과목분류	이수학년	비고
167	LJD5204	젠더와법	3	전공선택	사회경제법	2	
168	LJD5205	Transnational Criminal Law	3	전공선택	국제법	2	
169	LJD5206	국제가족법	3	전공선택	국제법	3	
170	LJD5207	기본권론심화	3	전공선택	공법	3	
171	LJD5208	개별규제행정법	3	전공선택	공법	3	
172	LJD5209	민형사상담클리닉	2	전공선택	기본실무	2	
173	LJD5210	조정클리닉	2	전공선택	기본실무	2	
174	LJD5211	공익인권클리닉	2	전공선택	기본실무	2	
175	LJD5212	국제형사재판소와국제법	3	전공선택	국제법	2	
176	LJD5213	투자자-국가분쟁해결	3	전공선택	국제법	2	
177	LJD5215	일본법강의	3	전공선택	기초법·법학인접	1	
178	LJD5216	통일법제의이해	3	전공선택	국제법	3	
179	LJD5217	금융법입문	3	전공선택	상사법	2	
180	LJD5218	법문서작성2	3	전공선택	기본실무	3	

마. 기업법무 특성화 교과목 일람표

○ 기업법무 특성화 교과목 현황

구분	전체 교과목	실무과목*		전공이론과목		특성화 분야 합계 (C) = (A) + (B)
		필수과목	선택과목 (A)	필수과목	선택과목 (B)	
특성화 분야 교과목 수	178		8		52	60
학 점	505		24		156	180
실무교과목	* 실무과목은 8과목(24학점) : 영문계약서작성실무(3), 회사소송실무(3), 상사법사례연구(3), 산업재해소송(3), 노동법사례연구(3), 경제법사례연구(3), 특허출원·소송실무(3), 지적재산권라이센싱(3)					

○ 기업법무 특성화 교과목 일람표

영역구분	교과목명	학점
기초법·법학인접	비교법	3
	경제행정법	3
	경제헌법론	3
공법	환경법	3
	국제사법	3
	도산법	3
민사법	경제형법	3
	Mergers & Acquisitions	3
상사법	국제거래법총론	3
	국제금융법	3
	금융거래법	3
	금융법입문	3
	기업과기업범죄사례연구(PBL)	3
	기업금융	3
	기업지배구조	3
	기업회계	3
	법경제학	3
	보험법	3
	상법총칙·상행위법	3
	상사법사례연구(PBL)	3
	상사중재법	3
	영문계약서작성실무	3
	유가증권법	3
	자본시장법	3

영역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전자상거래법	3
	해상법	3
	회사소송실무	3
조세법	국제조세법	3
	법인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상속증여세법	3
	소득세법	3
	조세법사례연구(PBL)	3
	조세법총론	3
	조세소송	3
	국제법	3
국제법	국제경제법	3
	국제계약법	3
	국제법	3
	국제통상분쟁	3
	국제투자법	3
	국제환경법	3
	사회경제법	3
사회경제법	개별적노동관계법	3
	경제법	3
	경제법사례연구(PBL)	3
	공익법	3
	공정거래법	3
	노동법사례연구(PBL)	3
	산업재해소송	3
	소비자법	3
	소비자와시장	3
	집단적노동관계법	3
	해고와부당노동행위	3
지적재산권법	3	
지적재산권법	국제지적재산권법	3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3
	엔터테인먼트법	3
	저작권법	3
	지적재산권과독점규제법	3
	지적재산권라이센싱	3
	특허법	3
	특허출원·소송실무	3
60개 교과목	180	



기타 생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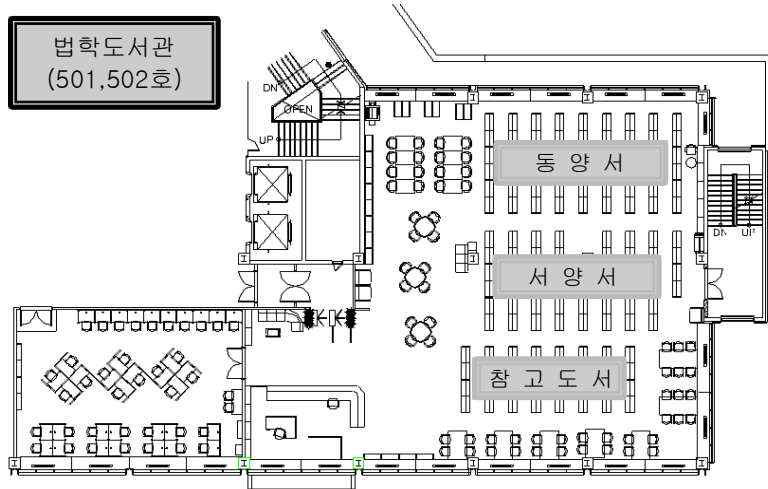
8. 기타 생활안내

가. 법학도서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①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http://skku.edu>) 하단 학술정보관 클릭
- ② 학술정보관 바로가기 : <http://lib.skku.edu>

법학도서관 문의전화 : 02-760-1177 ~ 8



법학도서관 이용시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학기중	방학중
평일	08:00~21:40	09:00~17:30
토요일	10:00~17:00	10:00~17:00

※일요일 및 국공휴일 휴실

나. 중앙학술정보관

실별 안내

층	자료실명	소장 자료 및 서비스
5층	· 기록보존실	우리학교 기록자료 (학교상징물, 학생회/동아리 자료, 행사자료, 대학행정 관련 자료 등)
4층	· 국내자료실 · 스터디룸 · 캐럴	* 국내자료실 - 국내 단행본, 아동도서, 과제도서, 취업자료
3층	대출/반납 데스크	대출/반납, 캠퍼스간 도서대출, 타기관 도서대출
	Research Commons	통계 프로그램,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검색PC, 인터넷,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
	미디어 자료실	DVD 대출반납, PC이용, 세미나실
	Presentation Room	소규모 세미나 및 회의실(25석)
	Team Project Room	소규모 세미나(8석, 3실)
	정보상담실	정보서비스, 학술정보 상담
2층	국외자료실	국외 단행본(동양서, 서양서), 신착간행물, 국외 예술 도록, 참고도서(사전류)
	특수자료실	북한에서 발행되었거나 공산권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내용의 자료로서 '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하여 지정된 자료(신문, 연속간행물, 단행본 등)
	제2서고	서양서, 제본 학술지, 신문, 존경각 자료
	스터디룸	소규모 스터디룸 8실
1층	· 제1열람실 · 제2열람실(노트북) · 제3열람실(노트북) · 서고 · 카페테리아	* 제1서고 - 국내서, 동양서 * 제3서고 - 개인문고, 준귀중본, 참고도서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GLS 사용방법

□ 예비군 신고

- 담당부서: 비상계획관실(600주년 기념관 1층, ☎ 760-1127~8)
- 전입신고
 - 방 법: 킹고포털 → GLS → 신청/자격관리 → 예비군전입신청
 -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GLS를 통한 예비군 신청 가능
- 예비군 전입신청 방법: 신청자격관리 > 예비군신청 > 예비군전입신청

학사일정 | 신청/자격관리 | 학적/개인영역 | 외국인유학생 | 수업영역 | 학업영역 | 상담영역 | 비교과영역 | IT서비스 | 국제교류 | 연구 |

메비군전입신청

신청/자격관리 > 예비군신고 > 예비군전입신청

기본정보

학번	성명	학위과정	직사
학부(전공)	주인번호		
학부구분	최종학력번호	일반신입학	학년/기수
재학여부	등록상태		유무료구분
주소			

예비군정보 ※ 군번 분실시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후 '나의 훈련정보'에서 확인 가능

군번	(*) 제외	할례명	계급
입영일자	//	군명	역종
편역일자	//	편역사유	편역구분
집정번호	(*) 사용	행드문	(*) 사용
우편번호	기본정보 주소와 동일함 (주민등록기준)		(*) 사용
주소(상가주지)		개인제일	
계좌번호	은행		
차량번호	차종구분	비고	

□ 연락처 조회 및 수정: 학적/개인영역 > 학적/신상정보 > 연락처조회및수정

학사일정 | 신청/자격관리 | 학적/개인영역 | 외국인유학생 | 수업영역 | 학업영역 | 상담영역 | 비교과영역 | IT서비스 | 국제교류 | 연구 |

메비군전입신청 | 연락처조회및수정

학적/개인영역 > 학적/신상정보 > 연락처조회및수정

성명: [] 학번: [] 학과전공: []
수입학년도: [] 수입학년: [] 수입학기: []

본인/관계자: [] 상세내역: Total 1 / 3

관계	번호	연락처구분	전화번호	국내외주소구분	우편번호	주소	번지	통지서수신
본인	1	휴우거지						
	2	휴터폰						
	3	E-Mail						

□ 등록금고지서출력: 학적/개인영역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학사일정 | 신청/자격관리 | 학적/개인영역 | 외국인유학생 | 수업영역 | 학업영역 | 상담영역 | 비교과영역 | IT서비스 | 국제교류 | 연구 |

등록금고지서출력

학적/개인영역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기본정보

학년도/학기	학 번	성 명
학위과정	분할납부여부	기상계좌번호(주리은행)
학부(전공)	등록/장학	연구등록여부

등록금명세

등록금	등록금액	장학금액	차수	납부예정액	납입액
필수	입학금				
	수업료				
선택	학생회비				

고지서출력이력

번호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구분

□ 증명서 발급 : <http://icert.skku.edu> 또는 600주년기념관 1층

성균관대학교 SKKU KYUNGPAK UNIVERSITY

증명서출력 | 증명서우편신청 | 진위확인 | 고객센터

증명서출력
CERTIFICATE ISSUANCE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 또는 전송(메일 링크)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우편신청
CERTIFICATE DELIVERY

증명서를 언제든지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우편신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위확인
VERIFICATION

진위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증명서 원본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FAQ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을수 있는 문제점들을 FAQ 메뉴를 통해 손쉽게 해결하세요.

[바로가기 >](#)



이용방법안내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방법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고객센터
1644 - 2378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마. 기타 편의시설 안내

□ 기숙사 : 2인 1실 기준 (우선선발 기숙사: K-하우스, 크라운빌 C동)

○ 기숙사행정실(760-0163)

- 기숙사 신청, 일정, 납부, 호실 배정 등
- 기숙사 룸메이트는 1차 신청기간에 GLS로 직접 신청(단, 별점이 있는 경우 불가)
- 기숙사생 선발 일정: 1학기 1월 말 ~ 2월 초 / 2학기 7월 말 ~ 8월 초
-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 홈페이지 <https://dorm.skku.edu> 참조

□ 셔틀버스

○ 셔틀버스 이용안내

- 노 선 : 본교 농구장 옆 주차장 → 혜화역 (1번 출구 방향 20m전방 승차장)
→ 학교입구(맥도날드) → 학교 정문 → 600주년 기념관 → 본교 농구
장 옆 주차장
- 요 금 : 400원
- 이용시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월 ~ 금 07:00 ~ 19:00 까지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미운행

□ 경영관 편의시설

- 지하 1층: 복사실, 우리은행ATM, 국민은행ATM
- 지하 2층: 식당(금잔디), 커피숍
- 지하 3층: 기념품매장, 사진관(740-1909), 편의점, 서점, 문구점, 안경점, 미용실,
꽃집, 커피숍
- 지하 4층: 헬스클럽(체력증진센터)
- 기타 편의시설 홈페이지 확인 : https://www.skku.edu/skku/campus/support/welfare_01.do

□ 법학관 편의시설

- 1층: 우리은행ATM
- 지하 2층: 복사실, 식당(법고을), 매점, 커피숍

□ 경력개발센터

- 위치: 법학관 4층 421호, 422호
- 연락처: (메일) lawcc@skku.edu, (전화) 02-760-0927-8
 - 유선 또는 오프라인 상담 신청 가능
- 홈페이지: <https://slscc.skku.edu/> (취업, 실무수습 정보가 게시됨)

[첨부]

법학전문대학원 주요규정

1.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2022.2.21.) -----	62
2.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2024.3.1.) -----	72
3. 법학전문대학원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내규(2017.3.1.) -----	81
4. 전문석사학위과정 졸업인증 요건인 신언서관의 운용지침(2021.2.22.) -----	83
5.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졸업시험 운용지침(2021.2.22.) -----	85
6.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회봉사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지침(2011.12.15.) -----	86
7. 법학전문대학원 현장학습과정 운영내규(2017.9.1.) -----	88
8.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법학사 기수학점 인정 지침(2011.4.5.) --	97
9.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규(2023.2.27.)-----	9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성균관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이하 “학칙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유, 평등, 정의 및 인의예지의 인본적 가치관을 토대로 풍부한 교양과 건전한 법조윤리관을 함양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법적 분쟁의 전문적, 효율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홍익인간의 이념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과정 및 분야를 둔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
2. 박사학위과정 : 전문연구분야
- ②본 대학원에 전항의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학전문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칙

제5조(기구)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주임교수(기획총괄교수)
3. 교수회
4. 운영위원회
5. 경력개발센터
6. 행정실
7. 리걸클리닉

제5조(기구)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원장
2.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주임교수(기획총괄교수)
3. 교수회
4. 운영위원회
5. 경력개발센터
6. 행정실
7. 리걸클리닉

제6조(교수회) ①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며, 그 구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교수 재적인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사항

3. 입학·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주요 규정과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원장은 교수회의를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⑤총장, 부총장은 교수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회의는 재적회원(휴직 및 연구년 중인 교수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교수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람하게 하며, 회의록에는 교수회의 의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주임교수(기획총괄교수) 및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을 임명하며,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행정실장은 간사가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계획 또는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위 수여를 위한 평가방법의 결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교강사 선정기준 및 수업에 관한 사항
5. 입학,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산하 각 위원회의 제반 규정 및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연구과정운영위원회, 장학위원회, 특성화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8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원장, 교무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5인 이상 임명하며, 원장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 개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특성화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적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의 2(실무교육과정심의분과위원회) ①제8조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내에 전문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의 실무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교육과정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교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차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1. 실무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에 관한 사항
2. 실무교육과정 수업에 관한 사항
3. 실무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실무교육과정 중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무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제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하며, 원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2. 신입생 및 편입생의 모집요강에 관한 주요사항
3. 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입학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연구과정운영위원회) ①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원장과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원장이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 임명하며, 원장은 연구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2(자기점검위원회) ①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한 자기점검을 위하여 자기점검위원회를 둔다.

②자기점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경력개발센터) ①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적성, 소질 등을 파악하여 학업, 진로 및 취업의 지도를 전문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센터를 둔다.

②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1인을 경력개발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1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둔다.

③센터장은 다양하고 적절한 학업지도 및 진로·취업지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등 경력개발센터의 운영을 통할한다.

④경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2(리걸클리닉) 리걸클리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실) ①행정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②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무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3. 학생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4. 연구교류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제 3 장 학사운영

제13조(수업연한) ①전문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3년,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에 따라 12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박사과정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 ②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③학위과정의 학기별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박사과정의 전공) ①박사과정의 전공은 기초법, 헌법, 행정법, 조세법, 형사법, 민사법, 상사법, 사회·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으로 구분한다.

②박사과정 학생의 전공에 관하여는 교과목의 이수상황, 학위논문의 주제 및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입학) ①원장은 연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인원을 정하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3분의 1 이상, 성균관대학교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학자격은 학칙 제18조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전공을 불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등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학칙 제18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특별전형에서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전형과는 별도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④석사과정 지원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 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사회활동 또는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⑤입학원서상 자기소개서에는 출신학교 및 출신학교 유추 가능 문구 기재를 금지하고 위배시 감점조치 등 불이익을 부과하며, 모든 제출서류상의 출신학교, 증빙서류 발급처 등 개인식별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처리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⑥입학전형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자격) ①석사과정의 편입학자격은 국내외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기를 이수할 재학생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박사과정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법학이거나 이와 유사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해당 과목 담당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입학)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의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유급) 석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성적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고, 매 학년 성적에 따라 유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학사경고 및 유급의 기준과 재이수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휴학)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첫 2개 학기 동안 병역의무이행,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할 수 없다.

제19조의2(제적) 석사과정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된다.

1. 연속하여 (휴학 후 복학한 경우도 연속된 것으로 본다) 3회 학사경고를 받거나, 통산하여 2회 유급된 경우
2.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

제 4 장 교육과정

제20조(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각 교과목 담당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1조(교과목) ①석사과정의 교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석사과정의 교과목 중에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및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이수학점) ①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수구분별 소요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전공필수과목 : 35학점
2. 전공선택과목 : 55학점 이상

②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J.D)를 취득하였거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학과장이 실시하는 구술시험을 통과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 12학점의 범위에서 이수학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③석사과정 학생은 제1항의 전공 이수학점 가운데 3학점 이상의 국제어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석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6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3조(선수학점) ①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법학을 전공하였더라도 특수대학원 출신인 경우에는 선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학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전공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교무부원장이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만을 이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정받은 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다.

③선수학점을 이수하더라도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선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과정의 수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위 ①~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은 모든 박사학위 과정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국내외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 ①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교환학생 포함)는 학기 개시일 30일 전까지 타대학(원)수강신청서 및 소정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내외 대학에서 수학한 석사과정 학생은 30학점의 범위에서,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은 18학점의 범위에서 매 학기 수강신청 마감일 전에 학점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석사과정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혹은 성균관대학교의 다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 총 9학점 이내에서 지도교수의 추천과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수의 인정 여부 및 이수 구분은 원장이 정한다.

⑤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해당 학교의 성적부여 방식을 참조하여 원장이 정한다.

⑥취득학점이 C등급 이하의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수강신청) ①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수강신청할

수 없다.

②석사과정 학생은 수강 중인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 중에 수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석사과정 학생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을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당 2과목으로 한다.

제26조(성적평가) ①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③재수강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더라도 변동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본교 「전임교원 책임학점에 관한 내규」를 따르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 이내로 한다.

제28조(지도교수) ①원장은 석사과정 재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학업, 진로 및 취업의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②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대우전임교원, 초빙교원, 석좌교수, 겸임교수 중 학생의 의사, 진로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적절히 지정하되, 충실한 지도를 위하여 교원 1인당 지도하는 학생이 15인 이내가 되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의 변경은 학생의 의사 및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원장이 정한다.

④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소정의 학생지도기록부에 지도사항과 교수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석사과정의 계절수업)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석사과정의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②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절수업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각 계절수업당 6학점 이내, 연간 총 9학점 이내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절수업의 성적평가는 학기 중의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학적부의 성적표시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 5 장 박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0조(자격시험) ①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응시원(면제원 포함)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③자격시험의 출제위원 및 감독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31조(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 ①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 1과목으로 한다. 단,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응시한다.

②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때 합격으로 한다.

제32조(박사과정의 외국어 또는 한국어 시험 면제) ①박사과정의 학생에게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교육부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33조(박사과정의 전공시험 응시자격과 평가) ①27학점 이상을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박사과정 재학생은 전공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②전공시험은 전공분야 1과목으로 하고,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때 합격으로 한다.

③전공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한 과목만을 재응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학점은 감면학점을 포함한다.

제34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의 출제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시험관리)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은 매 학기초 1회 실시하며, 시험결과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제 6 장 박사학위청구 논문

제36조(논문지도) ①박사과정의 재학생은 3학기초에 논문제목을 기재한 논문연구계획서를 교무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학생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②논문주제가 복합적인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2명 이상의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③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는 논문지도교수 1인당 5명 이내로 하되, 수료자는 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인정할 수 있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로부터 계속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될 때에는 원장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예비심사) ①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사람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박사학위논문의 예비심사위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원은 본심사 1개 학기 전에 논문작성계획서와 예비심사용 논문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예비심사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전공별 전임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참석하에 공개발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때 합격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논문심사) ①3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되고 전공시험과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총 2회 이상 실시한다.

③심사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논문심사의 합격 판정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⑤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 후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40조(석사학위 수여 요건) 학칙 제39조 소정의 과정을 평점평균 C+(2.3) 이상의 성적으로 수료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전문가로서의 신언서판(身言書判)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졸업시험과 신언서판 인증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학위수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박사학위 수여 요건) 학칙 제39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8 장 규정의 개정

제4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교수회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9. 3. 2.)

이 규정은 2009.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5.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은 전공필수과목 28학점, 전공선택과목 62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2011. 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7.)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 2. 27.부터 시행한다.
- ②(자기점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구성된 자기점검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③(석사학위 수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졸업시험의 방식 및 합격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3. 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분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술연구분야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분야에 계속 재적하는 학생은 입학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0.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2. 21.부터 시행한다.

전공	종합시험과목명	비고
기 초 법	법철학	1교시
	법사회학	2교시
	법사상사	2교시
	미국법연구	3교시
	인권법	3교시
헌 법	통치구조	1교시
	기본권론	2교시
	헌법재판	3교시
행 정 법	행정법총론	1교시
	지방자치법	2교시
	행정구제법	3교시
조 세 법	조세법 총론	1교시
	소득세법	2교시
	법인세법	2교시
	부가가치세법	3교시
	상속증여세법	3교시
형 사 법	형법총론	1교시
	형법각론	2교시
	형사소송법	3교시
	형사정책	3교시
민 사 법	민법총칙·물권법	1교시
	채권법	2교시
	민사집행법	2교시
	민사소송법	3교시
	가족법	3교시
상 사 법	국제사법	3교시
	회사법	1교시
	어음수표법	2교시
	상법총론	3교시
	해상법	3교시
	보험법	3교시
사 회 · 경 제 법	국제거래법	3교시
	독점금지법	1교시
	개별적노동관계법	1교시
	소비자법	2교시
	집단적노동관계법	2교시
	불공정거래행위법	3교시
지 적 재 산 권 법	사회보험법	3교시
	저작권법	1교시
	특허법	2교시
국 제 법	상표법	3교시
	국제법기초이론	1교시
	국제경제법	2교시
	국가이론	3교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 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목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뛰어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및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2. 법의 역사, 이념, 원치, 논리 등 법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탐구한다.
3. 개별 법령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지식, 나아가 비교법적 지식을 습득한다.
4. 판례의 이해, 분석 및 평석 등 판례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한다.
5. 법을 윤리, 철학, 사회, 문화, 정치, 과학기술적 맥락에서 학제적으로 탐구한다.
6. 법적 분쟁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인정 능력과 법적 정보를 수집, 평가, 정리, 체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조사 능력을 배양한다.
7.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여, 타당하고 유효한 법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분석 및 추론 능력을 함양한다.
8. 다양한 사회현상들로부터 법적 문제를 추출하고 그 법적 해결책을 도출,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9. 상대방의 진술, 의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법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서면 및 구술상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
10. 협상 및 조정의 원칙과 전략,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협상 및 조정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 및 조정 능력을 배양한다.
11. 국가 간 협상,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배양한다.
12. 법률전문가로서 사회 각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및 봉사 정신을 기른다.
13.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풍부한 교양과 정서를 함양하고 인간, 사회 및 세계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에 따라 실무과목, 법률과목 및 법학기초이론/인접학문 과목으로 구분한다.
2. 교과목의 중요성, 근본성 및 심화정도를 고려하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3. 교과목 이수단계에 따라 기초, 기반, 심화 및 응용단계로 구분한다.

②법률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과 법률지식 및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3. 모의재판
4. 실무수습(엑스턴십)
5. 기본권론
6. 국가권력규범론

7. 계약법
8. 물권법
9. 불법행위법
10. 형법 I, II
11. 행정법
12. 회사법
13. 민사소송법
14. 형사소송법

제4조(교육과정 이수 방법) ①석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 35학점을 취득하고, 선택과목 5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택과목은 전공계열별로 제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③학위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에서는 2개 학기에 한하여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과정	수료학점	학기당 수강신청 최대학점	비고
석사학위과정	90	18학점	6학기
박사학위과정	36	9학점	4학기

④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별표2의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따른다.

⑤전공 필수과목의 경우 해당 학년 및 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의무로 하며, 예외적 상황이 필요할 시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다.

제5조(전공계열 및 특성화) ①석사학위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계열을 둔다.

1. 공법계열
2. 조세법계열
3. 형사법계열
4. 민사법계열
5. 상사법계열
6. 사회·경제법계열
7. 지적재산권법계열
8. 국제법계열

②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위 계열 중 최소한 1개를 선택하여 그 계열에 속하는 선택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복수의 전공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

③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기업법무를 특성화분야로 한다.
특성화분야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장 수업운영 및 수강신청

제6조(수업일수 및 학습량 부과) ①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운영한다.

② 교강사는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하여 수강생의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휴·보강실시)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휴강사유 발생 시 사전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휴강신청서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 학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반 편성 및 분반 기준) ①원장은 교과목의 교육목표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강좌규모와 분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개설강좌의 수강정원은 수강신청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입력)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전자시간표 공시전 소정기간 내에 수업계획서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신청기간) ①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학위과정 및 학년(기수)에 따라 수강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장애학생의 수강신청절차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신청 철회) ①학기 중에 수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간 내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강신청을 철회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통지서에 ‘W’로 표시한다.

제3장 성적 평가

제12조(석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 ①성적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수업태도, 과제물, 토론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강좌 특성을 고려하여 구술, 논술, 실습, (팀/개인)프로젝트 등의 평가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성적평가는 원칙적으로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며 만점기준을 4.3으로 하며, 성적등급과 평가기준 점수 및 평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강인원에 따른 등급별 성적부여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필수과목	선택과목
A ⁺	17%	35% (교원 재량)
A ⁰	18%	
A ⁻	-	
B ⁺	55% (교원 재량)	55% (교원 재량)
B ⁰		
B ⁻		
C ⁺	10% (교원 재량)	10% (교원 재량)
C ⁰		
C ⁻		
D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별 성적부여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1. 국제어강의 과목과 수강인원 10명 이하 3명 이상인 선택과목은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40% 이내,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과 B⁺등급, B⁰등급 및 B⁻등급을 합하여 100% 이내로 할 수 있다.

⑤법조윤리 과목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되,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등급과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1. 필수과목: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1, 모의재판, 실무수습(엑스텐션)
2. 선택과목: 법률가의역할과책임, 고급법문서작성, 법정토론과스피치, 실무연수(인턴십), 공익인권클리닉, 조정클리닉, 민형사상담클리닉, 법문서작성2

⑦검찰실무1, 검찰실무2,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경찰실무 등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외부기관 주관 교과목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강의지원 담당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공동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제13조(교과목의 재수강)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 이하(F 포함)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성적이 F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재수강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25조 제3항의 재수강은 전체 6과목 18학점을 넘을 수 없다.

③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④재수강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성적의 공시 등)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 후 소정기간 내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출석부·과제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교무부원장이 보관한다.

제15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원장이 이를 취소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3.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부여된 성적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총 수업시간수의 5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의 성적
2.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로 3주 이상의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기 성적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③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원장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가 아니면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

제16조(학사경고) ①해당 학기에 평점평균 2.25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처분을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외 대학에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교과목의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국제어강의 과목 및 법조윤리 과목의 성적은 제1항의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평점평균에 산입할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점평균을 F(0.0)로 본다.

제17조(석사학위과정의 유급) ①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력의 보완을 위하여 학년(연속된 2개 학기를 말한다. 휴학 후 복학한 경우도 연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단위로 유급처분한다. 유급처분의 대상이 되는 학년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소정의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해당 학년의 평점평균이 2.25 이하이거나 원장이 따로 지정한 전공과목 중 F등급이 있는 경우
2. 학생이 학력보완을 이유로 유급을 신청한 경우
3. 학칙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②유급된 학생이 유급처분의 대상이 되는 학년 중 이수한 교과목 중 B*(3.0)등급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③본조의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제적)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처분한다.

1.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거나 통산하여 2회 유급된 경우
2. 유급된 기간을 포함하여 재학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로 휴학한 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석사학위과정의 졸업인증

제18조(졸업요건) ①총평점평균 C*(2.3) 이상의 성적으로 학칙 제39조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인증을 받은 때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신(身): 법조윤리의식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 총 40시간 이상 이수
2. 언(言): 국제어 자격 일정 기준 이상 취득
3. 서(書): 법률문장력 심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4. 판(判): 종합적 문제해결 과목 3과목 이상 학점 취득

②제1항의 졸업시험과 신인서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학위수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학위수여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심사 종료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3. 2.)

이 내규는 2009.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30.)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 12.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은 필수과목 28학점 이상, 선택과목 62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2010. 6. 15.)

이 내규는 2010. 6.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8.)

이 내규는 201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

이 내규는 2011.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7.)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 2. 27.부터 시행한다.

②(석사학위 수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3. 3. 1.)

이 내규는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

이 내규는 2013.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

이 내규는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본 개정 내규는 201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

①(성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석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1. 필수과목은 A⁺등급 14%, A⁰등급 16%, A⁻등급 20% 이내로 각각 부여하고,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2. 선택과목은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50% 이내,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3.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2의 경우 법전원협의회와 강의지원 담당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공동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②(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0. 6. 1.부터 시행한다. 단,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1.)

①(성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석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1. 필수과목은 A⁺등급 14%, A⁰등급 16%, A⁻등급 20% 이내로 각각 부여하고,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2. 선택과목은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50% 이내,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3. 형사재판실무의 경우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35%, B⁺등급, B⁰등급, B⁻등급을 합하여 65%를 부여한다.

②(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단, 2020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6. 1.)

①(성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석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1. 필수과목은 A⁺등급 14%, A⁰등급 16%, A⁻등급 20% 이내로 각각 부여하고,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2. 선택과목은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50% 이내,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3. 민사재판실무의 경우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35%, B⁺등급, B⁰등급, B⁻등급을 합하여 65%를 부여한다.

②(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1. 6. 1.부터 시행한다. 단, 2021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1.)

①(성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석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1. 필수과목은 A⁺등급 14%, A⁰등급 16%, A⁻등급 20% 이내로 각각 부여하고,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2. 선택과목은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50% 이내,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3. 형사재판실무의 경우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35%, B⁺등급, B⁰등급, B⁻등급을 합하여 65%를 부여한다.

②(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1. 12. 1.부터 시행한다. 단, 2021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5. 30.)

①(성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석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1. 필수과목은 A⁺등급 14%, A⁰등급 16%, A⁻등급 20% 이내로 각각 부여하고,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2. 선택과목은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50% 이내,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3. 민사재판실무의 경우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35%, B⁺등급, B⁰등급, B⁻등급을 합하여 65%를 부여한다.

②(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2. 5. 30.부터 시행한다. 단, 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2. 12. 1.)

①(성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석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1. 필수과목은 A⁺등급 14%, A⁰등급 16%, A⁻등급 20% 이내로 각각 부여하고,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2. 선택과목은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50% 이내, B⁺등급 이하는 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3. 형사재판실무의 경우 A⁺등급, A⁰등급 및 A⁻등급을 합하여 35%, B⁺등급, B⁰등급, B⁻등급을 합하여 65%를 부여한다.

②(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22. 12. 1.부터 시행한다. 단, 2022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1.

【 4.3 만점의 성적등급, 평가기준 점수 및 평점 】

등급	점 수	평 점
A+	97 ~ 100	4.3
Ao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o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o	74 ~ 76	2.0
C-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이하. 불합격	0
P	합격	

- 79 -

별표2.

【 교육과정 이수체계 】

과목분류		학점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수과목	기초과목	공법분야	7	기본권론(2)	국가권력규범론(2)	행정법(3)			
		민사분야	15	계약법(4)	물권법(3) 민사소송법(3) 불법행위법(2)	회사법(3)			
		형사분야	8	형법I(3)	형법II(2)	형사소송법(3)			
	기초실무과목	5	법조윤리(1) 법률정보조사(1)		법문서작성1(1)	모의재판(1)	실무수습(엑스틴십)(1)		
	합계	35	11	12	10	1	1		
선택과목	기초법·법학인접과목		해당 학기 이수 권장	법률가의역할과책임(2) 법사상사(3) 비교법(3)	국제법과국내법원(3) 법경제학(3)	법사회학(3) 법제사(3) 변호사의직업윤리(3) 현대법철학(3) 협상론(3)	법철학이론의쟁점(3)		
	기본실무과목			민형사상담클리닉(2) 공익인권클리닉(2) 조정클리닉(2)	검찰실무 I (3) 민사집행법(3) 요건사실론(2) 형사소송실무(3) 형사재판실무(3)	검찰실무 II (3) 공법소송실무(3) 민사소송실무(3) 민사재판실무(3) 법정토론프로젝트(1) 법문서작성2(3)	고급법문서작성(2) 실무연수(인턴십)(2)		
	전공 계열별 심화단과목	기본 프로그램 (심화과정)		1.공법 2.조세법 3.형사법 4.민사법	5. 상사법 6. 사회·경제법 7. 지적재산권법 8. 국제법				
		워크샵 프로그램 (응용과정)				1. 공법 2. 조세법 3. 형사법 4. 민사법	5. 상사법 6. 사회·경제법 7. 지적재산권법 8. 국제법		
	외국법			영미법(2), 일본법강의(3)	미국법I(2), 독일법(2), 프랑스법(2), 중국법(2)	미국법II(2), EU법(2)			
	합계			55 이상	55학점 이상				
	총계				90학점 이상				

※ 필수실무과목(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엑스틴십])의 수강을 위하여 해당 학기의 전 학기까지 개설되는 필수과목을 이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 운영규정 및 기타 본 대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성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의신청의 종류) 본 대학원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
2. 졸업에 관련한 사항
3.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년 진급과 관련한 사항
4. 기타 본 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제3조에 정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표1의 서식에 의거하여 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이의신청이 제3조에 정한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원장은 제4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을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 ①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이 정해진 사안의 경우는 그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처리 결과가 일반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장은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9. 1.)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의신청서

성명 :

학번(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의신청의 내용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이의신청의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

전문석사학위과정 졸업인증 요건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운용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40조(석사학위 수여 요건) 및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18조(졸업요건)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인증 요건인 신언서판 인증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언서판의 구체적 기준

가. 신(身)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법조윤리의식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아래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것

- ① 법조윤리와 관련된 과목(‘법률가의 역할과 책임(2학점)’, ‘변호사의 직업윤리(3학점)’ 등의 수강
- ② 법학전문대학원 권장 교양도서 3권 이상 독서 후 에세이 제출

(나) 사회봉사활동(총 40시간 이상)

- ① 근로봉사(16시간)
- ② 법률 관련 봉사(24시간): 법률상담, 법교육 기타 법률과 관련된 봉사활동

(2) 인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나. 언(言)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1) TOEIC 성적 850점 이상(TOFEL, TEPS 성적은 TOEIC 성적으로 환산함)

※ 입학년도의 3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이 위 점수 이상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2) 국제어 강의 1과목(3학점)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 취득

(3) 국제어 강의 2과목(6학점) 이상 학점 취득

다. 서(書)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1) 법률정보조사(1학점), 법문서작성1(1학점)을 이수하고 민사·형사·공법소송실무 과목 중 1과목(3학점), 합계 5학점 이상 이수

(2) 법률정보조사(1학점), 법문서작성1(1학점)을 이수하고 고급법문서작성 과목(1학점) 합계 3학점 이상 이수

라. 판(判)

(1) 전공 심화·응용과정에 개설된 모든 사례연구(PBL) 과목(각 3학점) 중 2과목(6학점) 이상 이수

3. 인증의 절차

가. 인증신청

인증요건을 갖춘 학생은 인증신청서를 시험성적표, 사회봉사활동증명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증 여부의 심사

학생의 인증신청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다. 인증취득 여부 표기

신언서판 인증의 취득여부는 성적증명서 하단의 “신언서판 인증란”에,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취득”으로 표기한다.

라. 취득 기한

2월 졸업예정자는 1월 31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7월 31일까지 신언서판 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학년 말까지 조기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7. 1.)

이 지침은 2010.7.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지침은 2021.2.22.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졸업시험 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40조(석사학위 수여요건) 및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18조(졸업요건)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법학전문석사학위 과정의 석사학위 수여 요건인 졸업시험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시험의 실시 시기 및 횟수) ①졸업시험은 학생이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3학년 과정 중에 2회 이상 실시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졸업시험의 방식 및 합격기준) 졸업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통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통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3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합격 여부는 각 과목별로 결정하며, 각 과목별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할로 한다.

제4조(추가 졸업시험의 방식 및 합격기준) ①추가 졸업시험 시행 여부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추가 졸업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3조를 따른다.

③추가 졸업시험은 해당 학년도에 시행되는 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중 해당 과목에 최소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2012. 6. 18.)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 6. 18.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졸업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별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2할 5푼으로 하고, 사례연구 과목 이수 경우에는 C(2.3)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때 해당 과목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3.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들은 공법사례연구, 민사법사례연구, 형사법사례연구 과목을 이수하여 B+(3.3)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22.)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2항 신설 전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시험 합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이 지침에 의해 합격한 것으로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회봉사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이하 “대학원생”이라 한다)의 사회봉사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봉사의 의의

사회봉사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석사학위과정 졸업인증 요건인 신언서판의 운용지침”에 따라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법조윤리를 현장에서 체득하게 할 목적으로 국내외 적절한 기관·단체에 파견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행한다.

3. 사회봉사의 내용

사회봉사는 근로봉사와 법률 관련 봉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근로봉사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다문화가족·노숙인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등을 부조 또는 구호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노력을 지원하는 활동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이하 “근로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전개함으로써 행한다.

나. 법률 관련 봉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무상으로 각종 법률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하는 활동 등 법률과 관련된 지원활동(이하 “법률 관련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전개함으로써 행한다.

4. 실시 시기 및 봉사활동 시간

가. 사회봉사는 재학 중에 실시하되, 4학기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대학원생은 사회봉사를 위하여 16시간 이상의 근로봉사활동과 24시간 이상의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5. 봉사기관의 선정

근로봉사는 대학원생이 스스로 선정한 기관·단체 중에서 원장이 대학원생의 근로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기관·단체(이하 “근로봉사기관”이라 한다)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법률 관련 봉사는 법률상담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원장이 승인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학원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정한 기관·단체(이하 “법률 관련 봉사기관”이라 한다)에 파견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근로봉사의무의 감면

가. 원장은 대학원생이 신체상의 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봉사기관에서 통상적인 근로봉사활동을 전개함이 곤란하거나, 학생회 활동 등 다른 대학원생을 위한 활동, 교재개발 참여, 통역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활동, 기타 공익적 활동이나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함을 이유로 근로봉사활동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생에 대하여 근로봉사활동 시간을 감경하거나 근로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봉사활동을 감면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별지 1. “근로봉사연수 활동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품위유지 및 법조윤리 준수 의무

- 가. 대학원생은 사회봉사 기간 중 예비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예절을 지키고, 각 기관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대학원생은 사회봉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각 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각 기관의 각종 물품을 오손 또는 무단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각 연수기관 관계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대가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8. 평가 방법 및 절차

- 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근로봉사 및 법률 관련 봉사를 일괄하여 가·부만 구분하고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가·부 등급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임교수가 각 기관 지도관의 의견 및 사회봉사 과정에서의 객관적 실적 등을 종합하여 별지 2. “법학전문대학원생 사회봉사활동 평정표”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현장학습과정 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전문석사학위과정생의 현장학습과정(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수습지도위원회) ①본 대학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실무수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수습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무수습 기관의 확보
 2. 기관별 실무수습생 지도
 3. 실무수습 결과의 평가
 4. 기타 실무수습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②위원회는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가운데서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교과목) ①실무수습 교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과목명	학점	실무수습시간	비고
실무수습(엑스턴십)	1	80시간 이상	필수
실무연수(인턴십)	2	160시간 이상	선택

②제1항의 실무수습 시간은 복수 기관에서 비연속적으로 실시한 것을 합산할 수 있다.

제4조(실무수습 이수 자격) 실무수습은 3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학생으로 학생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제5조(실무수습의 시기) 실무수습은 방학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대학원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무수습 기관) ①실무수습 기관은 본 대학원과 협약에 의한 기관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실무수습 기관을 섭외하여 수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대학원 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실무수습생 선발) ①실무수습생 선발은 본 대학원 학생부원장이 한다.

②실무수습생 선발은 각 기관별 지원자 중 선발시점까지 엄격한 상대평가에 의해 누적적으로 산출된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에 의한다. 다만, 실무수습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요청하거나, 또는 학생부원장이 실무수습 기관의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생 선발은 1인 1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수습 실적이 없는 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실무수습 시 준수사항) 실무수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실습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실무수습에 따른 각종의 보고서식 작성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명예와 품격을 유지하며, 예의범절을 갖추어야 한다.
4. 실습수습 시 알게 된 해당 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실무수습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실무수습 기관의 지도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실무수습 결과 제출) ①실무수습을 마친 학생은 수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1 내지 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무수습생은 별지 5호의 평가표를 해당 기관장에게 실무수습 시작일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

며, 그 결과의 본 대학원 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수습 평가 및 학점취득) ①실무수습지도위원회는 매 학기초 직전 방학 중 실시된 실무수습 결과에 대한 평가(Pass 또는 Fail)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하여 합격 평가를 받은 학생은 제3조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다.

부 칙 (2010. 3. 1.)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보고서

20 . . .

I. 수습생 인적사항, 수습기관과 지도관

수습생	반		조		학번	
	성명	(한자 :) 서명(인)				
수습기관						
지도관						

II. 수습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간)

III. 수습내용

※ 별지 실무수습 일지를 참고하여 실제로 수습한 결과를 개요만 간략히 기재함

IV. 수습에 관한 의견(소감 및 요망사항)

(별지 3-2)

검찰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구분	업 무	담당 지도관	필수 수습 업무		실제 수습 결과		지도관 확인	비고
			건수 (횟수)	수습생이 제출할 서류	건수 (횟수)	제출 서류		
기초 교육	기관 소개 및 부임 신고	기관 책임자	1회	부임신고서				
	지도관 기본 교육	지도관	1회					
수사 실무	①형사사건 수사 입회	"	1회					
	②공소장, 불기소장 작성	"	4회	공소장(불기소장) 초고 4건				
	③구속영장 기록 검토 및 유치장 검찰 참관	"	1회					
	④영상녹화조사 참관	"	1회					
	⑤현장검증, 변사자검시 입회	"	1회					
검관 행정 실무	①형사사건 접수, 배당, 처리 절차	"	1회					
	②압수실무	"	1회					
	③형집행실무	"	1회					
	④구치소 및 교도소 견학	"	1회					
	⑤민원전담관실 근무	"	1회	민원상담요지서 1건				
공판 실무	①공판관여 참관	"	2회	형사공판참관기 1건				
	②증거신청서 작성	"	2회	증거신청서 사본 2건				
	③논고문 작성	"	1회	논고문 초고 1건				
기타								
비고								

※ 기타란에는 필수 수습업무 외의 업무를 수습한 경우에 그 내용을 위의 양식에 준하여 기재함.

(별지 3-3)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구분	업 무	담당 지도관	필수 수습 업무		실제 수습 결과		지도관 확인	비고
			건수 (횟수)	수습생이 제출할 서류	건수 (횟수)	제출 서류		
일반	법원업무 및 청사 소개 실무수습일정 소개	기관 책임자	1회		회			
민사	지도관 기본교육	지도관	1회		회			
	신건 기록 검토 (법정방청 대상사건)	"	1회 (1건)	민사사건 수습일람표 1건 메모지 1건	회 (건)			
	판결 작성 및 강평	"	1건	판결서 초고 1건	건	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	1회	방청기 1건	회			
	조정	"	2건	민사조정사건 수습일람표 1건	회 (건)			
형사	경매(입찰)법정 방청	"	1회		회			
	지도관 기본교육	지도관	1회		회			
	신건 기록 검토 (법정 방청 대상사건)	"	1회 (1건)	형사신건 수습일람표 1건 메모지 1건	회 (건)			
	판결 작성 및 강평	"	2건	판결서 초고 2건	건	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	1회	방청기 1건	회			
	보석 기록 검토 및 심문 방청	"	1건	검토보고서 1건	건			
	약식명령사건 검토	"	2건	수습일람표 1건	건			
기타	구속영장 기록 검토 (당직사무 참관)	"	1건	검토보고서 1건	건			
	즉결심판 방청	"	1회		회			

※ 민사 및 형사 신건 · 속행 기록은 각각 수습개시 초기에 배당함. 이 사건들의 진행 경과에 따라 주심의 입장에서 매 기일 검토 · 메모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판결도 작성함(이 판결 건수도 판결 작성 필수 수습건수에 산입 가능).

※ 기타란에는 필수 수습업무 외의 업무를 수습한 경우에 그 내용을 위의 양식에 준하여 기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법학사 기수학점 인정 지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법학사 기수학점 인정을 위한 기본 방안'에 대하여, 2011. 3. 15. 2011학년도 제1차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4. 5. 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결정한다.

1. 법학사 기수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2. 기수학점 인정범위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성과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고, 과목의 동일성 여부는 담당교수가 판단한다.
3. 법학사 기수학점의 신청자격은 취득학점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인정 평가의 방법은 과목 담당교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구술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되, 이 경우 평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법학사의 기수학점 인정시 성적을 PASS로만 부여한다.
6. 법학사 기수학점 인정절차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직전 2월중에 진행한다. 다만, 금년도는 제도의 확정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4월중에 시행하기로 하되,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7. 법학사 기수학점 인정 신청은 재학중 1회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8. 이 지침은 2011. 4. 5.부터 시행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장학금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 ①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장,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정책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각종 장학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의 공정성) 장학생 선발권자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기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최대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교내 장학금 지급액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된 장학금 지급액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다.

성적우수 삼성	.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텐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한 자로서 성적우수자	등록금 일정액	
경제환경 삼성	.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텐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 일정액	소득분위 산정결과 적용
법전원 취약계층	.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텐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 또는 생활비 일정액	국고사업
재단 /기금	. 각 장학금별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등록금 또는 생활비 일정액	재단, 기금
기타	. 본 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이 설정되는 장학금		

제5조(지급대상 및 선정) ①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학하는 학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장학생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선정한다.

③장학생을 선발함에는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기혼학생에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판정결과와 더불어 부모의 경제환경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혼학생은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⑤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위원회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정한다.

제6조(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제7조(중복신청자의 처리) ①동일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장학금의 액수, 수혜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적으로 배정한다.

②장학금 성격, 지급기준 등에 따라 동일한 학생이 두가지 이상의 장학금을 한학기에 동시 수혜할 수 있으며, 이때 수혜가능한 장학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혜가능한 장학금 총액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1.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되고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한 장학생일 경우,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직전학기에 필수과목(실무수습(엑스틴십) 제외) 전부를 포함하여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학자금지원 3구간에 해당되는 장학생일 경우,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 재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학칙 위반자
6. 6학기 초과 수혜자

제9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2009. 3.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0.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경제환경상성 및 법전원취약계층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변경·신설사항 중 직전학기 이수과목/학점에 관한 부분은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부터 적용한다. 끝.

부 칙 (2022. 1. 27.)

(시행일) 이 내규는 2022.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9.)

(시행일) 이 내규는 2022. 8.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7.)

(시행일) 이 내규는 2023. 2. 27.부터 시행한다.